[서식 예] 지문감정촉탁신청서



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

사 건 2000가합0000 사해행위취소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문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.

아 래

1. 감정의 목적

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(을 제1호증)에서 피고측의 주장은 소외 망 ●●●가 생존당시 직접 임차인 소외 ◎◎◎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는바, 이것이 허위로 조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한 것 임.

2. 감정할 사항

위 을 제1호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찍혀져 있는 소외 망 ●●●의 지문과 소외 망 ●●●의 주민등록증상 지문이 일치하는지의 여부

3. 감정할 기관

귀원에서 지정하는 지문감정전문가

첨 부 서 류

1. 임대차계약서

1통

1. 주민등록증(소외 망 ●●●)

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수소법원	제출부수	신청서 1부
신청기간	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289조).		
검 증 의 의 의	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,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.		
감 정 의 대 상	・법규 : 외국법규, 관습 ・사실판단 : 교통사고원인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, 필적・인영의 동일성, 토지・가옥의 임대료, 공사비, 혈액형,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		
기 타	·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. 다만,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336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